

## 고소장 접수 방법:

모든 개인, 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서명한 UCP 불만사항 신고서를 다음 주소로 보낼 수 있습니다:

**Binh Nguyen, 책임자**  
**Office of Student Civil Rights**  
**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  
**333 South Beaudry Avenue - 18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팩스: (213) 241-3312**  
**이메일: EquityCompliance@lausd.net**

장애가 있거나 불만사항을 작성할 수 없는 학생은 (213) 241-7682로 연락하여 사이트 관리자/지정인 또는 학생 인권 사무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교육구는 가능한 최대의 범위로 기밀을 엄격히 지킬 것이다. 교육구는 고소장을 접수한 사람 또는 고소 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보복행위를 금지한다.

E.C. §262.3에 의거하여, 고소인은 민법 구제조치가 제공될 수 있음을 고지받으며, 이에는 위반조치, 접근금지령 또는 기타 구제/명령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으며, 주 또는 연방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해당되는 경우 왕따 법규가 포함될 수 있다.

교육구UCP방침 및 고소 절차 안내서는 무료로 제공된다.

UCP 관련 질문이 있는 경우 (213) 241-7682로 행정 조정관인 조셉 그린 박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고소건 조사 및 응답:

개별 불만사항 신고서는 UCP 정책/절차에 따라 해당 법률, 프로그램 및 컴플라이언스에 정통한 관련 사무소가 조사합니다. 조사 및 교육구 응답:

1. 불만사항 신고인 및/또는 정당하게 권한을 받은 대리인 및 지역 담당자가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2. 증거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타 사람이나 목격자로부터 관련 정보를 취득한다.
3. 관련 문서를 검토한다.
4. 불만을 제기한 자가 조사 일정을 연장하기로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불만사항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영어 또는 불만 제기자의 모국어로 조사보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 조사보고서에는 수집된 증거에 기초한 해당 사안의 조사 결과 및 결론과 시정조치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5. 이의 제기 권리 및 절차에 대해 공지합니다.

## 항소 방법:

고소인은 UCP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 및 활동에 관한 지역 결정/조사 결과에 대하여 지역 조사 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국가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결정에 대한 상소의 근거를 설명해야 하며, 원고소송의 사본과 지역의 조사 보고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는 다음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1430 N Street**  
**Sacramento, CA 95814**  
**<http://www.cde.ca.gov/re/cp/uc>**

**조사 및 지역 대응을 위한 60일 간의 기한은 학생 인권 사무소에 서면 불만사항을 접수할 때 시작됩니다.**



**학생 인권 사무소**

**균일  
고소**

**절차 (UCP)**

**로스엔젤레스 통합교육구  
법률 자문실**

## 왜 이 안내서를 만들었는가?

본 통지문은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보내는 연례 통지문으로서, 해방 주 및 연방 법률과 규정을 준수할 일차적인 책임은 교육구에 있으며, 교육구는 보호 대상 집단에 대한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협박, 집단 따돌림 또는 본 책자에서 제시된 모든 UCP 적용 프로그램 및 활동과 관련된 법률 위반 등에 대한 불만 제기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UCP 절차 참여에 대한 보복 및/또는 교육구 조사보고서에 대한 이의 제기 참여에 대한 보복 등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규정 §§4600-4694의 절차 및 교육구 정책/절차에 따라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위탁 보호 학생, 홈리스 학생, 교육구에 등록된 이전 청소년 법원 학생 및 군인 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적 권리 및 고소 절차에 대한 표준 통보는 교육법 (EC) §§48645.7, 48853, 48853.5, 49069.5, 51225.1 및 51225.2 에 명시된 대로 게시된다.

## 포함된 보호된 집단:

형법 제422.55조, EC 제200조, 220조, 정부법 제11135조에 규정된 보호집단에 근거한 학생들의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협박 또는 집단 따돌림의 혐의는 실제 또는 인식된 성, 성적 지향, 성별, 성 정체성, 성 표현, 인종 또는 민족, 인종집단 식별, 혈통, 국적, 국가 출신, 이민 상태, 종교, 피부색,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나이 또는 이러한 실제 또는 인식된 특성 중 하나 이상을 가진 사람 또는 집단과의 연관성에 근거하여, 지역구가 직접 수행하는 모든 프로그램 또는 활동, 상당한 지원을 제공하거나 미국 보이스카우트 및 기타 지정된 청소년 단체와 관련된 국가의 재정적 지원 또는 소속, 교육 프로그램 또는 고용에서 법 또는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기타 기반을 받는 또는 혜택을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불만사항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또는 그러한 사건의 사실에 대한 내용을 처음 접수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위반 혐의가 제기된 후 1년 이내에 불만사항을 제기해야 합니다.

## UCP 사법 부관할권:

- 성인 교육(§§8500-8538, 52334.7, 52500-52617)
- 방과 후 교육 및 안전(§§8482-8484.65)
- 농업직업 기술교육(§§52460-52462)
- 보상 교육(§54400)
- 통합된 범주별 지원 프로그램[34 CFR §§299.10-12, §64000(a)]
- 이민자 자녀 교육(§§54440-54445)
- 직업 기술 및 기술 교육, 직업 기술 및 기술 훈련 프로그램 (§§52300-52462)
- 보육 및 아동 발달 프로그램(§§ 8200-8498)
- '모든 학생의 성공을 위한 법'(20 United States Code §6301 et seq.: EC §52059)
- §210.3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의 재정지원을 받거나 주로부터 직접 자금을 받아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있어서, 형법 §422.55에 규정된 실질적 또는 인지적 성격을 포함하여 정부법 §§200, 220 및 §11135에 명시된 보호 그룹을 대상으로 한 차별, 괴롭힘, 위협, 집단 따돌림 및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실질적 또는 인지적 특성을 보인 개인이나 그룹과의 연관성에 기인한 차별, 괴롭힘, 위협, 집단 따돌림. (직원 대 학생, 학생 대 학생, 학생 대 직원, 제삼자 대 학생, 직원 대 제삼자 관련)
- 수유 중인 학생을 위한 합리적인 편의 제공 등 임신 또는 육아 중인 학생을 위한 편의 제공(§§46015, 222)
- 위탁보호 청소년, 집 없는 청소년 그리고 기타 청소년의 교육 및 졸업 권리(예: 소년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던 학생, 군인 가족 자녀, 신입생/전학생 및 이민 유학생) (§§48645.7, 48853, 48853.5, 49069.5, 51225.1, 51225.2)
- 학생 수수료(§§49010-49013)
- 교육 콘텐츠가 결여된 학업 기간(§§51228.1-51228.3)
- 체육 교육 시간(§51223)
- 교육구 자치 책무 운영 계획안(LCAP) (§52075)
- 지역 직업 센터 및 프로그램(§§52300-52334.7)
- 학업 성취를 위한 학교 계획(§64001)
- 학교운영위원회(§65000)
- 학교 안전계획(§§32280-32289)
- 주(州) 프리스쿨(§§8235-8239.1)

- 면허 면제를 받는 캘리포니아주 프리스쿨 프로그램의 보건 및 안전 문제와 관련된 결함(5 CCR §1596.7925, EC §8235.5) (해당 교실에 게시된 공고에 따름). 불만 제기 양식은 해당 학교 또는 [achieve.lausd.net/eeco](http://achieve.lausd.net/eeco) 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 주의 공립학교 총 교육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주의 교육 프로그램 또는 연방 교육 프로그램

교육구 소속 학교에 등록된 학생은 교육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학생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학생 비용은 수업 또는 등록 활동의 조건으로, 수업 또는 과외 활동 참여 조건으로, 수업 또는 활동이 선택 또는 보상 또는 학점을 위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학생에게 부과되는 비용이다. 자물쇠, 락커, 책, 수업 도구, 악기, 의류 또는 기타 자료 또는 장비를 얻기 위해 학생에게 요구되는 보증금 또는 기타 지불금; 교육 활동과 관련된 재료, 비품, 장비 또는 옷을 얻기 위해 학생이 해야 하는 구매. 학생 비용 고소건은 학교장, 교육감 또는 담당인에게 제출될 수 있다.

고소건은 익명으로 제출될 수 있는데, 학생 비용 및 LCAP 고소건을 포함하여 비준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이어지는 증거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교육구는 고소건 제기 전 일 년 이내에 학생 비용을 지불한 모든 학생, 학부모 / 보호자를 확인하여 이런 비용을 완전히 상환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고소건에 합당성이 발견되면, 구제조치가 해당 학생에게 제공되며, 교육적 콘텐츠 없는 교과목, 모유 수유 학생을 위한 편의조치, 위탁 보호 학생, 홈리스 학생, 교육구에 등록된 이전 청소년 법원 학생 및 군인 가족 학생의 경우이다; 구제조치는 학생 비용, 체육 교육 수업 분당 시간 그리고/또는 LCAP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에 모든 해당된 학생 그리고 부모/보호자에게 제공될 것이다.